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장호섭 의원 등 7명
- 발의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7.(목) ~ 11. 14.(목)

2.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제정)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

의 육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12세 이하 달서구 아동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기관(달서구가족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 정책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달서구 인구 및 12세 이하 아동 현황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비고
달서구 아동 (아동비중)	55,340 (9.91%)	51,753 (9.50%)	49,597 (9.24%)	46,479 (8.81%)	
달서구 인구	558,631	544,926	536,989	527,781	

달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 아동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아동	비고
2023. 12	832	35	22	
2024. 09	922	23	29	

달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2023년	6,893,000	4,825,100	1,033,950	1,033,950
2024년	4,945,386	3,461,770	741,807	741,807

관계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

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